

# 기안용지

분류기호 분서번호	사리 70.56- 14	전화번호	)	전절규정 제부시장	조사항 전절사항	
취미기간	시					
작성일자	1.20					
보존비율	1.20					
보존기관	제부시장	전절	(인)	법무담당관	법무심사	
	보서국장			(이규익심사)	감	1.20
	서리국장				감	
기안책임자	노경상	70.1.11	조	재장		
발수처	과안참조	발신	시장	통계		
제속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					

1.20  
1.20  
1.20

1.20  
1.20

(가) (안)

주신 내부결재

기록 동결

1. 70.3.19 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이규 제32 호 직업안정 업무 처리요강을 더욱 미비사항을 발견해같이 지적되고자 합니다.

가. 광고문의 배열이 비논리적이며

나. 시장, 구청장의 연부헌거가 명백하지 않으며

다. 행정처리의 실제 당시 및 처분상 행정 법령외 어처기 없으며

라. 직업안정관계 법령과 상충부분이 있으며

마. 영기 불기보조 (지정)가 열부분 되어 있음.

첨부 1)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 (안) 1부.

2) 대비표 1부.

3) 개정 이유 1부. 등.

(계속)

수신 수신처 양도

기록 동 건

1. 76.3.19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이규 322호 지연안정업무

처리요강을 별첨과같이 개정 시행하되 업무에 결함을 기함것.

첨부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 처리요강 개정 (서울시 이규 제 322호) 1부. 끝

수신처: 서울 1- 15, 서울 1- 2, 시민7,2,3군도지회관, 부더시업관.

(부속안) 2)

수신 문과장보실장

방시 보건서외무장

기록 시보 격외외

1. 76.3.19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이규 322호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이 별첨과같이 개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 처리요강 개정 1부. 끝.

9-2

이. 시정회 공인 퇴임 연부종 명명여 기고 (제3조)

~~이. 시정회 공인 퇴임 연부종 명명여 기고 (제3조)~~

가. 반 제75조 위반 사항 징정처분 (제75조 4항 사)

나. 통년 시정회 기 제79조 예 정한 징부종을 7년간 보관 (제79조, 제75조 4항 사)

다. 징기종 기 보로 기정) 후 징부종 퇴여 있음 (제77조)

라. 징정 회, 징정 회원인 비수 외 징부 징기종 징정하여 징정하여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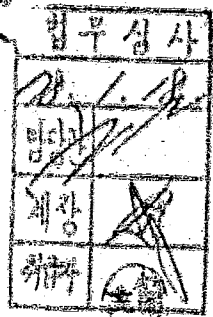
(제3조, 제7조, 제9조, 제77조)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증 <sup>개정요강</sup>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78년 / 월 70일

서울특별시장 구라출



부 의 안

시정위원회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1.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2.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3.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4.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2) 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제 11조중 (인내소의 직업상당) 을 "(직업안내소의 직업상당)" 으로 한다.

제 15조중 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에 ... 자, 이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항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이는 ... 자를 ... 한다.

3. 다음 항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이는 ... 30일이 ... 한다.

4. 다음 항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이는 ... 10일이 ... 한다.

다. ... 제 26조에 ... 의무상 ... 누설한 자

사. ... 제 75조에 ... 1년간 ... 하는 자

아. ... 이의의 ... 위반한 자

제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조 (보고) (1) 구청장은 1,2종 직업안내소의 직종별 구인, 구직 현황  
현황과 시로 현황을 다음 본기 개시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1,2종 직업안내소의 영업정지 처분 후 이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이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회

이 요강은 ... 시행 한다.

내 용	개 요
<p>제1조 (업무 범위) 국장(총무관공무보급관과 이부장기)은 다음을 업무로 수임한다.</p> <p>1. 행정직인내소의 각종 직업안내서 작성 및 배포를 위한 각종 시책의 연구 및 추진에 관한 사항</p> <p>2. 부속규칙 제정 및 개정의 간주에 관한 사항</p>	<p>제1조 (업무 범위) 직통</p> <p>1. 1,2종 직업안내서 및 예산 기입금통 계 영의장기 및 분과 조 롱 시책의 연구를 위한 <del>추진</del> 사항</p> <p>2. 직업안정법 (이하 법" 이하관망) 제1조, 제70조 규정의 외관 및 각 신청의 진달 (신청)</p> <p>3. 1,2종 직업안내서인 허가사항 변경 (신청)</p> <p>4. 부속규칙 제정 및 개정의 간주</p>
<p>제6조 (공공직업안내서의 직업안정)</p> <p>제7조 (직업안내서의 직업안정)</p> <p>(1) 직업안내서의 직업안정</p> <p>(2) 2종 직업안내서장은 ...관과</p> <p>(3) 3종 안내서장은 ...관과</p> <p>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비롯 방학지등)</p>	<p>제6조 (공공직업 1종 직업안내서의 직업안정)</p> <p>제7조 (직업 직업안내서의 직업안정)</p> <p>(1) 2종 직업안내서의 직업안정</p> <p>(2) 직 통</p> <p>(3) 직 통</p> <p>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재거등)</p>
<p>제8조 (주민등록 전수)</p>	<p>제8조 (공공직업 1종 직업안내서의 주민 등록 전수)</p>

제 10조 (구인표와 구직표(원칙) 구인표와 구  
직표는 (구인표와 구직표)의 외적 비율의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은 이  
를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을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을  
이외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구인표와 구  
직표는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을

제 11조 (안락소의 취업상당)  
제 12조 (영업제한 기준) 구직상당  
..... 단락.

1. 최소

가 - 가 (상당)

2. 상당

3. 영업제한 30일

가 - 나 (상당)

4. 영업제한 70일

가 - 다 (상당)

다. 단락로 경우 이외의 영업제한을  
위반한 자

제 13조 (안락소의 취업) (1) 공공 1,2종  
의인안락소장은 구인표와 구직표(원칙)  
의 비율의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  
의 비율을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  
의 비율을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  
의 비율을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  
의 비율을 구인표와 구직표(원칙)의 비율

(2) 영업제한 기준 제 12조에 정한 상  
당은 1년과 2년 한자 (신설)

제 14조 (취업안락소의 취업상당)  
제 15조 (영업제한 기준) 하 통

1. 다음 단락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가를 최소 단락.

가 - 가 (상당)

2. 하 통

3. 다음 단락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업제한 30일에 해당 단락.

가 - 나 (하 통)

4. 다음 단락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업제한 70일에 해당 단락.

가 - 다 (하 통)

다. 단 제 26조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신설)



99	좌	방	(	철	레)
100	매	전	경	진	기
101	간		약		이
102	강				막
103	록				판
104	라	의	오	(	카라디오)
105	을				것
106	은		도		게
107	라		이		라
108		솔	(	대	행)
109	간	전	경	진	기구(셀)
110	가		방		류
111	전				막
112	탁		자		보
113	목	공	도		구
114	의	료	기		구
115	기	계	기	구	류
116	번		호		기
117	호	리	키		스
118	문	음	구		류
119	신	문	철		이
120	간		막		이
121	기타 권좌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품류.				